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119항공대 운영 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-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제·개정 후속조치

◇ 주요내용

- (통제관 직제 변경)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항공대 신설
 - 중앙소방항공대 직제 신설에 따른 운항통제관 관련 개정
- (임무역할 구체화) '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' 역할 정의
 - 구조·구급 임무 시 조종사, 조작자, 구조구급대원의 역할을 세분화
- (지상안전 강화) 항공기 지상 유도(입출고) 시 안전관리자로 지정
 - 안전관리자외 최소 2인 이상이 업무를 수행 의무화
- (보고 절차 명확화) 조종사가 발견 결함에 대해 보고절차 명확화
 - 결함발견시 신속한 보고와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
- (탐승 기준 명확화) 항공대원 탐승 기준을 「119법」에 따르도록 명시
 - 화재출동 등 운항지원에 대한 사항과 지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

◇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